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
- 의안번호 : 제2438호
- 발의일자 : 2025년 2월 3일
-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2. 제 안 이 유

-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함. 특히 피마자 유박비료의 경우 다른 유기농 비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비료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아 도심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화단에 사용되고 있는데, 해당 비료에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이를 반려동물이 먹고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시장이 공원, 산책로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유박비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이 어려운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유박비료의 살포를 막고 반려인에게도 주의를 주어 반려동물이 폐사하는 경우를 막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시장이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제한이 어려운 경우 유해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점 토 의 전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원, 산책로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사용되는 유박비료¹⁾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거나 제한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 유박비료 살포를 막고 반려인에게도 주의를 주어 반려동물 폐사를 막으려는 것임.

나. 점토의전

- 지난 2020년부터 ‘아주까리 유박비료’에 포함된 리신에 독성이 있어 개나 고양이가 먹게 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²⁾ 아파트, 공원 등에서 유박비료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에 지난 2021년 ‘반려동물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³⁾이 발의되었으나 폐기(임기만료)된 바 있음.⁴⁾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박비료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 점검 후에 공급되도록 하는 등 안전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리신은 비료 1kg

1) 식물성 기름을 짜낸 후 남은 찌꺼기를 건조시켜 만든 유기비료로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토양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1984년부터 판매되고 있음.

2) KBS(2020.7.2.) 건강했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었다!...곳곳에 뿌려지는 ‘유박비료’의 정체
KBS(2024.4.25.) “함부로 먹었다간”...반려동물 ‘유박비료’ 주의!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7.22.) 의안번호(11646),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반려동물유해물질 사용 금지	<신 설>	○누구든지 반려동물 유해물질을 아래의 장소에 사용을 금지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반려동물유해물질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신 설>	○반려동물 유해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지자체에 공원·산책로 등에 비농업용으로 아주까리 유박비료 사용 금지를 요청한 점, 도심지 조경용 비료판매 시 회원사 자발적 입찰 참여 금지 공문을 발송한 점, 유박비료의 경고 문구를 위반하여 살포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행정제재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하는 비료에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당 10mg만 함유되도록 하였고⁵⁾ 이보다 두 배인 20mg의 리신이 포함된 비료를 동물이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서울시 농수산물통과는 ‘아주까리 유박비료’는 질소 등 비료 주성분 함유량이 좋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합법적인 재료로써 현재 경고문구를 표기하고 특별 관리⁶⁾하고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 따라서 반려동물에 유해한 비료나 농약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므로 조례 개정(안 제30조 신설)에 앞서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5) ‘아주까리 유박비료’에 한하여 리신 : 10mg/kg,(단,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

6) 농수산물통과담당관-7034(2024.5.10.), 아주까리유박비료 주의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가. 비료생산업자, 수입업자: 아주까리유박 및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비료 포장지에 3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나. 비료판매업자: 비료 구매자가 아주까리유박 등 구매 시 주의사항 안내
다. 비료사용자: 포장지에 표기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비료 살포

[붙임]

☐ **비료 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중 아주까리 유박비료**

비료의 종류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사항
09. 아주까리유박 <정의>아주까리 (피마자)에서 기름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 조 한 것	건물중에 대하여 비 소 20mg/kg 카드뮴 2mg/kg 수 은 1mg/kg 납 50mg/kg 크 롬 90mg/kg 구 리 120mg/kg 니 켈 20mg/kg 아 연 400mg/kg 아주까리유박에 한하여 리신: 10mg/kg(단, 비료의 원료로 사용 할 경우에는 제외)	2. 아주까리유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 맨아래에 앞면 전체 면적의 1/10의 크기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다.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